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4. 1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4.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.4.4.
- 다. 상정일자 : 제2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8.4.1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-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박 재 숙

가. 제안이유
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, 해석상 혼란이 있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

- 자동계좌이체 납부시에만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확대하여 시행

현 행	개 정
(서울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)	
제14조의2 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	제14조의2 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고지서 1장당	고지서 1장당
자동계좌이체	150원
전자송달+자동계좌이체	500원
계좌 자동이체	150원
신용카드 자동이체	
전자송달	
전자송달+계좌 자동이체	500원
전자송달+신용카드 자동이체	

2)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명확화

- 현행규정은 『협동조합기본법』 상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감면을 규정하여, 조직 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설립조건이 되는 조문을 추가
-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의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란이 있어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.

현 행	개 정
(서울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)	
제13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.	제13조의2(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6호나 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

3. 검토보고 (송인수 전문위원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액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,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판결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